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66호

「의료법」제45조의3에 따라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
2017년 9월 19일

보건복지부장관

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의료법」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,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고시는「의료법」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.

제4조(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)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.

1. 「의료법」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·분석자료
2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(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)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.

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.

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, 서식(내용)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「의료법」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·게시하여야 하며,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「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지침(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62호)」을 따른다.

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,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(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)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재검토기한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제6항의 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(제4조제2항 관련)

연번	항 목	기 준	상한금액주)(원)
1	일반진단서	**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**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	20,000
2	건강진단서	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	20,000
3	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	**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서식]**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	10,000
4	사망진단서	**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**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	10,000
5	장애진단서 (신체적장애)	**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**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* 보건복지부고시 **'장애등급판정기준'**에 따른 신체적 장애	15,000
6	장애진단서 (정신적장애)	**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**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* 보건복지부고시 **'장애등급판정기준'**에 따른 정신적 장애	40,000
7	후유장애진단서	질병,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,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	100,000
8	병무용 진단서	**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6호의 서식]**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	20,000
9	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	**보건복지부고시「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」[별지 제1호 서식]**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	15,000
10	상해진단서 (3주미만)	**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**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	100,000
11	상해진단서 (3주이상)	**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**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	150,000
12	영문일반진단서	**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**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'일반진단서'를 말함	20,000
13	입퇴원확인서	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, **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)**	3,000
14	통원확인서	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**외래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**	3,000
15	진료확인서	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**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**	3,000
16	향후진료비추정서 (천만원미만)	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	50,000

연번	항 목	기 준	상한금액주)(원)
17	**향후진료비추정서 (천만원이상)**	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	100,000
18	**출생증명서**	**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 서식]**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	3,000
19	**시체검안서**	**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**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,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* 검찰,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	30,000
20	**장애인증명서**	**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 서식]**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	1,000
21	**사산(사태)증명서**	**의료법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 서식]**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(死産) 또는 사태(死胎)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	10,000
22	**입원사실증명서**	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 기준과 동일함	입퇴원확인서와 같음
23	**채용신체검사서 (공무원)**	**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별지 서식**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*** 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**	40,000
24	**채용신체검사서 (일반)**	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*** 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**	30,000
25	**진료기록사본 (1~5매)**	**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**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	1,000
26	**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**	**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**(6매부터, 1매당 금액)	100
27	**진료기록영상 (필름)**	방사선단순영상, 방사선특수영상, 전산화단층영상(CT) 등 **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**	5,000
28	**진료기록영상 (CD)**	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**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**	10,000
29	**진료기록영상 (DVD)**	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**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**	20,000
30	**제증명서 사본**	기존의 제증명서를 **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**	1,000

주) 상한금액은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

2 주요 질의응답

Q1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거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 항목 중 30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.

* 「의료법」 제45조의2 및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[별표1]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 항목

Q2 상한금액의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?

○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항목별 대표값(최빈값 또는 중앙값 등) 및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, 법적책임과 환자의 부담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입니다.

Q3 고시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「의료법」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·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운영하는 **전체 의료기관(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)에 적용**됩니다.

* 동 고시 제3조

Q4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단위는 무엇인가요?

○ 상한금액은 제증명 **1통당** 발급 비용입니다.
(진료기록사본은 1매, 진료기록영상 필름/CD/DVD는 1장의 발급 비용)

Q5 상한금액에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?

○ 제증명서 발급을 위한 **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별도입니다.**

- 다만,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측검사(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혈압, 시력, 청력 등), 일반혈액검사(혈색소, 공복혈당, 총콜레스테롤, HDL-콜레스테롤, 중성지방, LDL-콜레스테롤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, AST, ALT, 감마지티피 등), 요검사(요단백 등), 흉부방사선 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(TPBE 등) 및 특이질환(B형 간염 등) 검사 비용 등은 제외입니다. * 동 고시 제2조 및 [별표]

Q6 동 고시 [별표] 30항목 외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?

○ 동 고시 제4조제2항의 [별표]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 명칭, 서식 및 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, 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에 의거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,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·게시하여야 합니다.

- 다만, 내용,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,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.

(예, 수술확인서는 진료확인서로, 내원확인서는 통원확인서 등으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함)

* 동 고시 제5조제3항 및 제4항

Q7 제증명서의 발급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?

○ 고시된 30항목의 경우 **목적이나 용도 구분 없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.** 다만, 법정 서식이 명시 되어 있는 **항목의 경우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.**

* 향후 법정 서식이 마련되지 않는 항목은 표준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

Q8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나요 ?

○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습니다.

- 다만, 「의료법」제45조제2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.

*「의료법」제45조에 의하면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수수료비용은 게시하여야 하고,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

Q9 제증명의 무료 발급이 가능한가요?

○ 발급 수수료는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**무료 발급도 가능합니다.**

Q10 현재 운영 중인 제증명수수료를 변경(인상·인하)하는 경우, 변경된 발급 수수료의 고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동 고시 제5조제6항에 따라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(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)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, **동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.**

○ 동 고시 최초 시행일은 2017년 9월 21일이며,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홈페이지 수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고시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11	**입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,**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?

○ 확인서(입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)는 진단명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동 고시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

Q12	**동 고시 [별표] '항목의 기준' 이외 별도의 서식(내용)이 기재된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, 발급비용은 어떻게 징수해야 하나요?**

○ **제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자(보험회사 등)가**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, 서식 및 내용(**구체적인 진료내역, 향후 치료소견 등)**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,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* 동 고시 제5조제3항

Q13	**시체검안서의 경우, 발급 요구 주체(유족, 검찰·경찰)에 따라 상한금액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지나요?**

○ 주검에 대하여 유가족 요청에 의해 의학적으로 확인 후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는 동 고시 상한금액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출장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. 한편, 검찰·경찰의 변사신고에 의해 검안과 정황조사까지 시행 후 교부하는 시체검안서는 제외됩니다.